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7

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임오경·윤후덕·이병훈

박성준・박 정・고용진

도종환 · 김경만 · 양경숙

양이원영 · 김남국 · 김영배

장철민 · 오영환 · 윤관석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,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.

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으로,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.

그러나,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이나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 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

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,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8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의 방지를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·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8제2항 전단 중 "자료"를 "자료(퇴사 등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된 징계사건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	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	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
시책의 마련) (생 략)	시책의 마련) ① (현행 제목 외
	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
	계의 성폭력 등 폭력의 방지를
	<u>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·감</u>
	독을 강화하여야 한다.
제18조의8(징계정보시스템의 구	제18조의8(징계정보시스템의 구
축·운영 등) ① (생 략)	축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	2
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	
위하여 필요한 <u>자료</u> 를 체육단	<u>자료(퇴사 등의</u>
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	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된 징계
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	사건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)
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	
라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